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2. 2 선고 2020나63526 판결 [계약금반환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2. 2 선고 2020나63526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8. 18 선고 2020가단234730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

담당변호사 손석봉

피고, 항소인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두의법률

담당변호사 정준영

변론 종결2021. 9. 9.

판결 선고2021. 12. 2.

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8. 18. 선고 2020가단234730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와 피고는 2017. 7. 25. 피고가 제조하는 여성청결제 화장품 "C 분말브랜드 관련 제품"(이하 '이 사건 제품'이라 한다)에 대한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, 계약기간은 2년 6개월, 계약금 명목으로 첫 발주 물량의 대금 50%를 지급하기로 하고 발주 물량을 수령함과 동시에 나머지 50%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.

나. 이 사건 계약의 특약 사항으로 피고는 원고에게, '피고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소송(보전소송 포함), 중재 또는 행정절차, 기타 분쟁이 없음'을 진술하고 보장하였다.

다. 원고는 2017. 7. 31.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첫 발주물량 2만 개의 대금 중 50%에 해당하는 125,000,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.

라.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기간만료 전인 2019. 7. 22. (주)J와 사이에 'K파우더(3그램) 분말타입'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3, 4,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아래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20. 2. 17.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으므로,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.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가. 이 사건 계약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유통 및 판매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인데, 피고가 공급하기로 한 이 사건 제품은 유통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분쟁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하였으나, 피고는 주식회사 I와 분쟁 중인 상태였다.

다.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독점권 보장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제품을 다른 회사에 공급하였다.

3. 판단

가.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제품은 식약처가 정한 화장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으로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달리 이 사건 제품이 화장품으로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는, 피고가 구 화장품법(2018. 3. 13. 법률 제1548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)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제품이 화장품으로서 판매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, 구 화장품법 제3조 제3항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보고의무규정을 정한 것으로 판매가 가능한 화장품으로서의 요건 및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(구 화장품법 제8조), 위 보고의무규정을 위반한 화장품에 대하여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(구 화장품법 제15조)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주식회사 I가 2018. 1. 31.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, 이 사건 계약이 2017. 7. 25.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계약 당시 주식회사 I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,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분쟁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 것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고, 설령 주식회사 I와 피고 사이에 민사소송만 이 사건 계약 이후에 제기되었을 뿐, 이 사건 계약 당시에 민사소송의 원인이 된 분쟁은 이미 진행 중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 보더라도, 이는 계약체결의 동기나 원인 사항에 대한 착오나 기망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사유는 될 지언정, 이 사건 계약의

이행(이 사건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독점권 보장)과는 무관한 사항으로서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다. 이 사건 계약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유통 및 독점권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피고가 다른 회사인 (주)J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갑 제6,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주J에게 공급하기로 계약한 제품 역시 이 사건 제품과 동일한 브랜드로서 제품명에 'L'이 들어가 있고, 같은 분말 제품이며, 그 주요 성분 역시 락토바실러스 발효물로서 동일하고, 기능 역시 여성의 질 청결제로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독점 유통 및 판매권 보장에 관한 피고의 채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니,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 (주)J에게 공급하기로 한 제품이 이 사건 제품과 용기, 사용법, 성분, 용량이 상이하여 서로 다른 제품이라고 주장하나, 피고는 위와 같이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을 특정하여 주장,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은 사소한 부분으로서 제품의 동일성을 부정할 결정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,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독점권을 부여한 이 사건 제품은 단일 품목으로서의 'C' 화장품이 아닌 'C' 분말브랜드 '관련' 제품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(주)J에게 공급하기로 한 제품이 'K'의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제품과 성분이 유사하고, 같은 분말 제품이며, 기능까지 동일한 바에야 이 사건 계약에서 독점권을 부여한 'C' 분말브랜드 '관련'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또한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제(이행거절)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계약해제는 피고의 귀책사유(채무불이행)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므로,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4. 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위 계약금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.

5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정민

판사김정현

판사박재성